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2030134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예성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변론 종결 2020. 6. 17.

판결 선고 2020. 7. 2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6가합54160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 108,768,000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133,991,000원,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 516,191,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 9,639,984원, 원고 B에 15,955,896원, 원고 C에 85,183,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1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및 2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2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위 2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절차를 거쳤고, I연구소의 추가공사 관리비산정보고서와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추가 간접공사비가 모두 입증되므로, 피고는 3차수 계약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로서 원고 A에 9,639,984원, 원고 B에 15,955,896원, 원고 C에 85,183,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3차수 계약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2. 10. 8. 대통령령 제2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다. 판단

- 1)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용으로서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2015. 11. 11. 이 사건 통신·전기·시설공사계약의 제1회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3차수 공사기간을 각 152일 연장한 사실, 원고 A는 2016. 6. 17., 원고 B는 2016. 5. 4., 원고 C는 2016. 6. 21. 각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사실, 원고 A와 원고 B는 2016. 7. 4., 원고 C는 2016. 7. 26. 이 사건 통신·전기·시설공사의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3) 나아가 원고들이 3차수 계약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J, K의 의견서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3, 제3호증의 13, 갑 제5 내지 8호증(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일부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가) 1 연구소 작성의 각 보고서(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3, 제3호증의 13)○ 위 각 보고서에서는, 총공사기간 연장(원고 A, B 488일, 원고 C 487일)에따른 추가 간접비를 산정하였는데, 원고 A는 108,768,000원, 원고 B는 133,991,000원, 원고 C는 370,964,000원의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위 각 보고서는 원고의 의뢰로 작성된 사감정(私鑑定) 결과일 뿐만아니라 특히 제1심 감정인은 위 각 보고서에 대하여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바(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등), 위 각 보고서는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비용 지출 자료(갑 제5 내지 8호증)

○ 갑 제5 내지 8호증은 원고들이 지출하였다는 각종 비용에 관한 자료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군부대 내라는 특수성이 있는바, 공사가 중단된기간 동안 원고들이 군부대 내에서 현장사무실을 별도로 유지·관리하였는지, 원고들의 직원들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현장을 출입하거나 부대 인근에서 숙식한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비용에 관한 자료들이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당초 계약 물량의 공사를 위해 투입된 노무비, 당초 공사계약에 포함된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비용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전문심리위원 K, J의 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출 자료들 역시 원고들이 3차수 계약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간접노무비 지급서류나 영수증 등 원고들이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3차수 계약의 계약대금을 공사일수로 나눈 일평균비용에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 '감정인은 감정 착수 시점에 감정신청인 측에 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각 당사자 실무자들에게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비용 계산이 될 수 없고 현재도 그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간접비 계산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정경근, 판사 최은정